

서울특별시종로구소하천점용료등장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8
----------	------

제출년월일 : 2007.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정산식 적용
(안 제4조)

나.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별표1의 비교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소하천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7.2.2 ~ 2007.2.22)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단서중 “경작이나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을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1의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가격”이라 함은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조·제3조 및 제7조중 “소하천정비법”을 각각 “「소하천정비법」”으로 하고, 제3조제4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별표1의 제2호가목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4호나목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종로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 조례</u>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 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 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 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 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 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u>점작이나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	<u>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u>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 ----- ----- ----- ----- ----- ----- -- <u>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u> ----- -----.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비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토지가격"이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